


- 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-
처 리 결 과 보 고 서

구 분	요구사항				처리결과		
	계	시정	처리	건의	계	완료	추진중
계	9	3	5	1	9	9	-
공 통	5	1	4	-	5	5	-
기획감사실	4	2	1	1	4	4	-




기획감사실


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

지시번호	공통-1	조치구분	완료	실과장 확 인	
제 목	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				
지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기정사실에 대한 오류와 오타,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, 행정용어(입찰계약, 2인이상 수의계약 등)에 대한 통일 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. ○ 또한, 일부 부서의 경우 작성자의 입장에서 형식적이고 단답형의 자료 제출에 그치고 있으며, 요구의원에 대한 사전 문의도 없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. 				
조치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난 군정 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, 앞으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,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 작성 및 제출바람. (처리요구) 	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부서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주의깊게 살펴 통일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,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작성 등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음. 				
비 고					


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

지시번호	공통-2	조치구분	완료	실과장 확 인	
제 목	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				
지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△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△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로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. ○ 또한, 「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관련 안내」(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3982, 2021.9.1.) 에 따르면, 연내 교부예정인 국고보조사업(지방비 부담사업 포함)이 월별·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고,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. 				
조치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립전 예산의 집행 시 의원 정책간담회 또는 청양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통해서 사전 보고를 이행하기 바라며,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(처리요구) 	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립전 예산 집행 시 사전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, 관련법령, 지침 등에 따라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. 				
비 고					


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

지시번호	공통-3	조치구분	완료	실과장 확 인	
제 목	SMART청양 운동 적극 이행				
지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양군은 열악한 지역기반, 급속한 노령화,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「SMART청양」 운동을 범군민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음. ○ 「군민화합과 지역경제 살리기로 다함께 행복한 청양!」을 비전으로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설정하는 한편, 범 군민운동 확산을 위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,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,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·관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참여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. ○ 또한,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「공사·용역·물품 계약 시 다양한 관내업체 이용 촉구」를 주문한 바, 금년도 감사요구자료 수의 계약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관외업체 이용비율이 높음. 				
조치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스마트청양 운동은 군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임을 명심하고, 부서별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구입을 위한 사전검토 이행 등 스마트청양 운동 실천에 매진하기 바람. (처리요구) 	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, 앞으로 다양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스마트청양 운동 적극 동참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음. 				
비 고					


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

지시번호	공통-4	조치구분	완료	실과장 확인	
제 목	적극적 예산 집행 추진				
지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에 의거,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, ○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의거,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. ○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인 예산액 대비 30% 이상 미집행 현황을 보면,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미집행 잔액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. 				
조치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년 본예산 편성 관련 제출부서는 부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, 편성부서는 2022년도 사업별 집행현황 관련 면밀한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 (처리요구) 	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부진사업 최소화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. 				
비 고					


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

지시번호	공통-5	조치구분	완료	실과장 확인	
제 목	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				
지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, ○ 「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」 제18조에 따르면,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.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.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○ 그럼에도 불구하고, 2019년부터 청양군이 추진해 온 145건의 학술연구용역 관련,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(프리즘) 등재를 소홀히 한 바 있음. 				
조치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적된 기간 동안의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시스템(프리즘) 등재를 바로 시행하고, 향후 추진된 정책연구결과에 대해 과제담당관(주관부서의 장)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(시정요구) 	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 부서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(프리즘) 등록 요청 공문 발송(2022.8.11./기획감사실) 한 바 있으며, 앞으로도 반기별로 등재 요청 공문 발송 및 등록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. 				
비 고					


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

지시번호	기획감사실-1	조치구분	완료	실과장 확인	
제 목	정책연구결과 등재 관리 철저				
지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, ○ 「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」 제18조에 따르면,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, 제2조에 따라 총괄부서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,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함. ○ 본 결과보고서 「공통3.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」를 주문한 바,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바 있음. 				
조치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결과 등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,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(시정요구) 	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용역결과 현황을 꼼꼼하게 관리함은 물론 누락건에 대해서는 등재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으며, 매년 용역결과 등록현황을 정리하여 의회에도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음. 				
비 고					


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

지시번호	기획감사실-2	조치구분	완료	실과장 확인	
제 목	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행정감사 개선				
지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의회 의원은, 주민과의 접점에서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, 행정에 대한 의문이나 시중에 떠도는 여론 등을 수집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며, ○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연간 90여일의 회기 동안, 행정사무감사,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질문,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. ○ 각종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질의·응답시 거론되는 특정 사업이나 단체, 법인 등은 의원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닌, 그러한 활동을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축적된 것임. 				
조치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론되는 특정 사업이나 단체, 법인 등에 대해 감사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통한 진위 여부 또는 적합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하고,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함. (건의) 	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사업이나 단체·법인 등 지원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 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수행 전반 상황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제재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이행하겠으며, ○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특정감사를 실시,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음. 				
비 고					

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

지시번호	기획감사실-3	조치구분	완료	실과장 확 인	
제 목	특별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철저				
지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. ※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: 계상할 수 없음(법제처, 안건번호21-0678,2021.12.7.) ○ 그럼에도 불구하고, 위 현황과 같이 최근 3년간 청양군 특별회계中 예비비 편성비율이 100분의 1일 초과하고 있음. 				
조치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년도 본예산(안) 제출시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, 앞으로는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(시정요구) 	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수요가 적고 예비비 비율이 높은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진출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따라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. 				
비 고					

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

지시번호	기획감사실-4	조치구분	완료	실과장 확 인	
제 목	주민참여예산 편성대상 개선				
지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며, 군민의 주인의식 향상과 지역 소속감을 높여 호응도가 높은 제도임. ○ 위 현황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검토해 보면, 주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개별부서에서 일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사업(예: 뚝방설치사업, 방지턱 설치사업)을 시행하고 있어 제도 취지를 벗어나고 있음. 				
조치지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편성단계부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(처리요구) 	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앞으로,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주민생활 밀착사업,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, 청년정책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,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. 				
비 고					